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당의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이용에 관한 질의회답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당의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이용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회답문 1부. 끝.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 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

주무관

장경희

지도계장

정재휘

선거담당관

김종익

사무국장

전결 11/13

속히기

협조자

시행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2019.11.13.) 접수 도시계획과-13338 (2019.11.13.)
-2020

우 049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14 공영빌딩 3층 / http://su.nec.go.kr/su/kj/sub1.jsp

전화 (02)3436-1390 /전송 (0505)058-2119 / jangkhu@korea.kr / 공개

정당의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이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는 민간이 유료로 이용하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와 국가·공공단체가 시책이나 행사 홍보시 이용하는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두 종류의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정당에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확인사항(도시계획과 최복주 주무관)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는 공공단체가 무료로 이용하는 현수막 게시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29조에 규정된 공공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정당이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무료로 이용할 경우를 문의함.

【 답 】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지침 포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없이 정당에 무료로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019. 11 13.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